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52

제출일자 : 2021. 2. 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1. 4월 준공예정인 독산1동(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위탁체 현황		원장	보육정원	비고
		연면적(㎡)	층수	위탁체명	위탁기간			
(가칭) 구립독산 롯데캐슬 어린이집	독산동 1005번지 롯데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내 (독산1동)	382	지상1층	-	2021.7.1. ~2026.6.30.	-	69 (예정)	신규위탁 (21.7.1 개원예정)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18.12.24) 및 시행('19.6.25)

- 실제적용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19.9.25)
- 단,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운영하지 않을수 있음

※ 해당 단지의 경우 927세대로 의무설치 대상임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

2)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

3)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1. 7. 1. ~ 2026. 6. 30.)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7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1)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무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적절하다고 판단됨

2)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어린이집연합회 간 네트워크 운영이 강점이 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7조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4조의3

관 련 규 정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6.7.18.>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본조신설 2020.7.17]